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27
----------	------------

제안년월일: 2024년 2월 27일

제 안 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라돈을 차폐하기 위한 공법의 사용은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소관 사무의 원칙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폐 등의 공법’ 적용을 권고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설치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폐 등 공법 적용을 권고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의2).

3. 참고사항: 생 략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2제1항 중 “경우에는”을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로,
“줄이거나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라돈을 차폐하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를 “줄이기 위하여 차폐 등의 공법을 사용하는 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8조의2(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① 시장은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거나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라돈을 차폐하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의2(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① ----- ----- --- <u>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u> ----- ----- ----- ----- 줄이기 <u>위하여 차폐 등의 공법을 사용하는 등</u> ----- ----- ----- -----.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① 시장은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하여 차폐 등의 공법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시행규칙 제10조의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3. (생 략)	제2조(정의) 1. ~ 3. (현행과 같음)
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 <u>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u> 」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 ----- 「 <u>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u> 」(이하 “ <u>시행규칙</u> ”이라 한다)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① <u>시장은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하여 차폐 등의 공법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 ② <u>시장은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